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 등

가. 보험종목의 명칭 : 무배당 알리안츠프리미어즉시연금보험

나. 보험의 종류 및 연금지급형태

보험의 종류	연금지급형태		
1형 즉시형, 2형 거치형	종신연금형	보증기간부 (개인계약/ 부부계약)	정액형(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, 35년, 40년, 100세보증)
			체증형(10년, 20년보증)
			소득보장형(10년, 20년보증)
	보증금액부		
	확정연금형	확정연금형(5년, 10년, 15년, 20년, 30년)	
상속연금형	종신플랜		
	환급플랜(10년, 15년, 20년)		

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,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가. 보험기간

보험의 종류	보험 기간		
즉시형	종신연금형		계약일부터 종신까지
	확정연금형		계약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(5년 · 10년 · 15년 · 20년 · 30년)까지
	상속연금형	종신플랜	계약일부터 종신까지
		환급플랜	계약일부터 만기(10년 · 15년 · 20년)까지
거치형	연금개시전 보험기간	계약일부터 Y세(45세 ~ 최고 75세) 계약해당일 전일까지	
	연금개시후 보험기간	종신연금형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
		확정연금형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(5년 · 10년 · 15년 · 20년 · 30년)까지
		상속연금형	종신플랜
환급플랜	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		

				만기(10년 · 15년 · 20년)까지
--	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

**나.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, 연금개시나이, 피보험자 가입나이**

보험의 종류	납입기간 및 납입주기	연금개시나이(Y)	피보험자 가입나이
즉시형	일시납	45세 ~ 80세	45세 ~ 80세
거치형	일시납	45세 ~ 75세	(Y-5)세 ~ (Y-1)세

※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

**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4. 배당에 관한 사항**

배당금이 없음

**5. 보험료에 관한 사항**

**가. 기본보험료**

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로 최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 5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**나. 추가납입보험료(거치형에 한함)**

- (1)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.
- (2)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%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, 1회에 납입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.
- (3) ‘(2)’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

(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) 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(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.0%,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.0%)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.

(4)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(2)’의 한도를 적용한다.

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가. 일시납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시납보험료를 할인한다.

할인조건	할인금액
일시납보험료 1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일시납보험료 1억 초과금액의 0.7%
일시납보험료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일시납보험료 3억 초과금액의 1.0% + 140만원
일시납보험료 5억원 초과	일시납보험료 5억 초과금액의 1.2% + 340만원

나. ‘가’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할인된 금액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더하여 적용한다.

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8.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.
- 나. ‘가’ 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.
- 다.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, 인출할 당시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(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의 50%를 한도로 한다.
- 라. ‘다’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총당할 수 없거나,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,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,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마. 회사는 인출금액의 0.2%와 2,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. 다만,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.
- 바.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.

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가.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.

나.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.

다.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 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% ~ 120%범위 내에서 정한다. 다만,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$$\text{공시기준이율} = \text{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} \times \alpha + \text{운용자산이익률} \times (1 - \alpha)$$

(1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

(가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begin{aligned} & \text{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} \\ & = \text{국고채(5년) 수익률} \times \text{국고채 가중치}(\beta 1) \\ & + \text{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수익률} \times \text{회사채 가중치}(\beta 2) \\ & + \text{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} \times \text{통화안정증권 가중치}(\beta 3) \\ & + \text{양도성예금증서(91일) 유통수익률} \times \text{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}(\beta 4) \end{aligned}$$

(나)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.

(다) 국고채(5년), 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및 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(91일)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.

(라) 국고채 가중치(β 1), 회사채 가중치(β 2), 통화안정증권 가중치(β 3),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(β 4)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
$$\text{국고채 가중치}(\beta 1) = \frac{a}{a+b+c+d}$$

$$\text{회사채 가중치}(\beta 2) = \frac{b}{a+b+c+d}$$

$$\text{통화안정증권 가중치}(\beta 3) = \frac{c}{a+b+c+d}$$

$$\text{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}(\beta 4) = \frac{d}{a+b+c+d}$$

-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균의 평균)
-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균의 평균)
-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균의 평균)
-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균의 평균)
-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-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%이상 100%이하로 결정한다.

(2) 운용자산이익률

(가)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text{운용자산이익률} = \text{운용자산수익률} - \text{투자지출률}$$

(나)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.

운용자산수익률(%)

$$= \frac{2 \times I}{\sum_{t=1}^{12} [\text{직전}(t+1)\text{개월말 운용자산} + \text{직전}(t)\text{개월말 운용자산}] / 12 - (I - E)} \times 100$$

투자지출률(%)

$$= \frac{2 \times E}{\sum_{t=1}^{12} [\text{직전}(t+1)\text{개월말 운용자산} + \text{직전}(t)\text{개월말 운용자산}] / 12 - (I - E)} \times 100$$

- **I** :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
- **E** :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

(다)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.

(3)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

(가)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\text{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}(\alpha) = \frac{A/B+C}{A+C}$ $\text{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}(1-\alpha) = 1 - \frac{A/B+C}{A+C}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A :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</li><li>- B :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</li><li>- C : 직전년도 수입보험료</li></ul>
---

(나)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
(다)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.

(라)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,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(마) 「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」과 「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」, 「수입 보험료」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.

(바) 「수입보험료」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.

라. ‘가’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[‘가’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]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
마.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.0%로 하고,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.0%로 한다.

바.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(상품공시실)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.

사.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「공시이율 운용지침」에 따른다.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(이하 “보험계약대출” 이라 합니다)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.
- 나. 계약자는 ‘가’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
- 다.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
- 라.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,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.

### 13. 기타

- 가.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에 한하여 연금지급주기는 월단위로 한다.
- 나. 거치형에 한하여,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(1-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)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,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.
- 다.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.
- 라. 보험기간, 납입주기,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